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6. 6. 27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6월 26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26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6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6. 27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○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구 본청, 동사무소, 보건소의 정원을 재조정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○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대에 따라 구 본청의 일반직 5급 1명과 6급 1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일반직 9급 정원 11명을 감축 함.

○ 동사무소의 정원 162명을 현원과 일치하도록 78명을 증원하여 240명으로 정하고 구 본청 정원을 78명 감축 함.

○ 환경위생과의 위생기능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소 정원을 14명 증원하고 구 본청 정원을 14명 감축 함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○ 김 성 배 위원의 수정안 동의

6. 修 正 案 의 要 旨

○ 수정이유

- 본 개정 조례안은 "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"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임에도 부칙에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"로 되어있어 2006년 7월 1일 시행되는 "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"보다 먼저 시행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조례의 시행일을 일치시키기 위함.

○ 수정안 본문

- 부칙 중 "공포한 날부터"를 "2006년 7월 1일부터"로 함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함)

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중 "공포한 날부터"를 "2006년 7월 1일부터"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(현행과 같음) ------ 2006년 7월 1일부터 -----.